

청주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가합10818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윤현진

피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9. 7. 25.

판결 선고 2019. 9. 5.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391,706원 및 그 중금 283,954,642원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3. 31.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8. 5.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6. 4. 접수 제253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391,706원 및 그 중 금 283,954,642원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3. 31.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 연 8% 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63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16.부터 2025. 11. 1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범위를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8조(담보)

③ 본인은 담보물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이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원고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이 약정 존속 동안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다. 2문 생략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한다. 단서생략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비용
 5. 미납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 3, 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 대위변제수수료
-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1. 제8조 3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비용

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 1) 피고 회사가 2018. 9. 21. 대출이자 연체를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9. 1. 4.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D은행에 원금 280,000,000원, 이자 3,954,642원 합계 283,954,642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 2)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위약금은 676,600원, 대지급금은 채권보전비용, 근저당권이전비용, 소송비용, 채권보전비용 등을 포함하여 4,760,464원(이하 위 미수위약금과 대지급금을 합하여 '이 사건 미수위약금 등'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률은 2019. 3. 31.까지는 연 10%, 2019. 4. 1.부터는 연 8%이다.

라.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

원고는 D은행에 위와 같이 대위변제를 한 후, 2019. 1. 4. D은행이 피고 회사의 사업장 토지 및 건물2)

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중 이 사건 대위변제금액 283,954,642원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변제액을 위 대위변제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9. 1. 29. 접수 제1923호로 2019. 1. 4.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의 부동산 처분

피고 B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6. 4. 접수 제25324호로 피고 C 앞으로 2018.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C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이는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4. 2. 21.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3,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그 매수자금으로 40,000,000원을 빌려주어, 위 40,000,000원을 보태어 피고 B가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피고들을 비롯한 피고 형제들이 위 토지에 위 부동산 중 별지 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이라 한다)을 지어 피고 B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며, 위 주택에 피고 형제들의 부모님이 거주하였다. 피고 형제들은 부모님의 사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고 C의 위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을 피고 형제들이 분배하기로 한 바 있었으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가 F조합에 부담하고 있던 근저당권부 채무 8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아 위

대위변제금 전액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으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³⁾ 체결일인 2018. 5. 10.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고 회사가 2015. 11.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은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9. 1. 4. 원고가 D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점,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예산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 B는 2014. 2.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토지를 14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② 같은 날짜 G조합 노은지점에서는 위 각 토지의 감정가를 90,263,000원으로 감정한 사실, ③ 피고 C은 2018. 6. 4. 피고 B로부터 위 각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거래가액을 115,200,000원으로 매수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위 부동산의 가액은 115,200,000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 피고 B는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286,076,746원, G조합 노은지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7,000,000원, 피고 C에 대한 채무원리금 60,000,000원 합계 403,076,746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피고 C에 대한 피고 B의 대물변제임을 피고 C이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⁴⁾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가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넘겨준 이상 피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일부 이전받은 위 근저당권은 1순위 근저당권으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가운데 이 사건 미수위약금 등의 합계 5,437,064원(= 미수위약금 금 676,600원+ 대지급금 금 4,760,464원)는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미수위약금 등 채권 5,437,064원에 관하여 여전히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위 미수위약금 등 채권은 그 성립시기로 보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위변제금 뿐 아니라 위 미수위약금 등 채권

또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6. 4. 접수 제253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기두

판사이지형

판사조민식

별지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분이 2019. 3. 2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바, 청구취지 중 연 8%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위 부분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9. 4. 1.이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보다 뒤에 오는 날짜가 되어 앞뒤가 맞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부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 주문과 같이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 기각 주문도 내지 않았다.

2) 피고 회사 소유의 충남 예산군 E 답 765㎡외 1필지와 지상건물 5동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들이다.

3) 피고 C은 위 매매계약의 실질이 대물변제라고 자인하고 있는바,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등기부 기재 등기원인인 '2018. 5. 10. 매매계약으로 부른다.

4)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의 다른 재산으로 H 자동차가 있으나, 이에 대한 2018년도분 자동차세가 27,070원이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